

부산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4769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유상호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봉근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5. 12.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0가단327610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교환적 변경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12. 23.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은 2022. 5. 13.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99,993,6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그 범위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에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보험계약의 해지확인청구로 청구취지를 교환적 변경하였으므로,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항소는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8. 12.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담보 및 보장내역

담보명	보장내역	가입금액
질병입원급여금 (1일 이상 담보)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입원일수> 해당액 지급(180일 한도)	10,000원
질병입원의료비 (갱신형)담보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지급(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및 1사고당 최고 가입금액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전액 및 실제 사용병실(최고 2인실 기준)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지급(※ 단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하는 발생 입원 의료비 총액의 40% 지급)	1억원
질병간병비담보	질병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입원 31일째 가입금액의 50%, 61일째 가입금액의 50%, 91일째 가입금액의 100%를 각각 지급	100만원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5. 5. 6.부터 2020. 3. 31.까지 P병원, Q병원, R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대상포진, 허리 통증, 추간판 장애, 관절통 등의 질병으로 총 93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질병입원급여금 9,570,000원, 질병입원의료비 87,471,413원, 질병간병비 13,000,000원 합계 110,041,413원(=9,570,000원+87,471,413원+13,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청구 등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2.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2. 5.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93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별지 3 기재와 같이 위 입원일수 중 889일은 허위 또는 과다 입원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원인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99,993,613원(=질병입원급여금 9,030,000원+질병입원의료비 77,963,613원+질병간병비 13,000,000원)이다. 피고가 위와 같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그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그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를 담은 2022.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 기재와 같이 부당한 입원치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99,993,6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입원이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 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제1심 법원의 V단체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93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10,041,413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V단체는 피고의 입원치료 중 일부는 실제 입원치료 일수보다 짧은 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99,993,613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① 입원은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입원을 하여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나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에 따른 진료 및 약물 처치·경과관찰은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서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입원치료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진료기록감정은 실제 입원 기간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진료기록만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치료방법 및 입원일수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한 것일 뿐이어서 그 사후적인 판단이 피고와 직접 대면하여 계속적인 면담과 진찰을 통하여 치료방법과 입원 기간을 결정한 담당 의사의 판단보다 객관적으로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환자의 진료기록에 드러나는 진단명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방법 및 입원일수보다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의 필요성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 및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입원의 필요성을 진료기록이나 통계적 임상자료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정확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입원치료내역에 관하여 진료기록이나 통계적 임상자료 등에 의존하여 사후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만으로 입원치료 당시 피고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실제 입원한 일수보다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선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15. 5. 6.경 만 63세로 비교적 고령에 해당하고, 기저질환으로 당뇨병, 무릎과 어깨의 관절통, 추간판 장애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피고는 담당 의료진의 지시 및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먼저 담당 의료진에게 입원치료를 요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며, 피고가 입원기간 중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치료에 전념하지 않았거나 의사가 퇴원이나 통원치료를 권유하였음에도 입원을 계속하였거나 또는 의사와 담합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계속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⑤ 비록 피고의 입원 내역 중 일부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거나, 보존적 치료 내지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기간이 인정되나, 원고는 보험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통상 보험금청구를 받을 때마다 입원내역을 확인하는 등 자체적인 심사 및 결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특별히 증상을 과장하는 등과 같이 입원 치료의 필요성에 관하여 담당 의료진 내지는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정이 없고,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체 심사를 통하여 부당한 입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청구에 이르기 전까지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였다.

⑥ 피고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원고의 심사를 거쳐 수령한 보험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해지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기간 동안 존속하는 계속적 계약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어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경위,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 일수나 그에 대한 보험금 액수, 보험금 청구나 수령 횟수, 보험계약자 측이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정, 서류의 조작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보험금 청구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한편 이러한 해지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보험자에게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험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이러한 해지권은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구체적 사안에서 해지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거나 기지급 보험금을 반환받는 것을 넘어서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은 자칫 보험계약자 측에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자가 이와 같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제1심 법원의 P병원, Q병원, R병원, S병원, W의원, X의원, Y병원, Z병원, 부산대학교한방병원, AA병원, AB의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① V단체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피고의 입원치료내역 중 피부과 입원치료일수 106일 중 92일, 내과

입원치료일수 105일 중 91일, 정형외과 입원치료일수 749일 중 741일에 대하여 입원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입원치료일수 중 진료기록이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한 8일을 제외한 합계 28일의 경우에도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였거나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대상 입원치료일수 합계 960일 중 과잉입원으로 판단되는 입원일수가 적어도 952일에 달한다.

② 피고가 별지 2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내역의 병명은 주로 당뇨, 관절통, 추간판장애 등인데, 위 질병의 경우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이 질병 유무와 증상 정도를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장기간 입원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질병이며, 각 입원 당시 피고의 활력징후나 각종 검사 결과, 입원 중 치료내역의 대부분이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정치료가 입원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아래허리통증을 이유로 2015. 5. 6.부터 2015. 12. 12.까지 3개 병원에서, 추간판전위를 이유로 2018. 2. 1.부터 2018. 6. 21.까지 5개 병원에서, 무릎관절증을 이유로 2018. 7. 5.부터 2019. 1. 2.까지 5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는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환을 이유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적정입원일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전체 입원일수 중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일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해지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2022. 5. 1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해지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지영, 판사 이재희, 판사 정성호

별지 1

보험종목: D

계약번호: U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8. 12. 23.부터 2051. 12. 23.까지. 끝.

별지 2

구분	유형	구분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수	진단명	의료비	입원일당	간병비	총지급액
정형	입원	정형	20150506	20150526	21	아라하리통증	1,315,100	210,000		1,525,100
정형	입원	정형	20150615	20150704	20	아라하리통증	1,713,520	200,000	500,000	2,413,520
정형	입원	정형	20150724	20150813	21	아라하리통증	1,908,350	210,000	500,000	2,618,350
정형	입원	정형	20150909	20150929	21	아라하리통증	841,600	210,000		1,051,600
정형	입원	정형	20151015	20151031	17	아라하리통증	1,645,680	170,000	1,000,000	2,815,680
정형	입원	정형	20151123	20151212	20	아라하리통증	1,339,600	200,000		1,539,600
정형	입원	정형	20160102	20160122	21	어깨 관절통	2,265,950	210,000		2,475,950
정형	입원	정형	20160321	20160405	16	어깨 관절통	1,891,320	160,000	500,000	2,551,320
정형	입원	정형	20160504	20160517	14	어깨 관절통	1,278,330	140,000		1,418,330
정형	입원	정형	20160615	20160630	16	어깨 관절통	2,961,740	160,000	500,000	3,621,740
정형	입원	정형	20160709	20160722	14	다상포진	1,562,760	140,000		1,702,760
정형	입원	정형	20160722	20160804	13	다상포진	943,800	130,000		1,073,800
정형	입원	정형	20160808	20160813	6	다상포진	294,200	60,000	500,000	854,200
정형	입원	정형	20160816	20160827	12	다상포진	658,160	120,000		778,160
정형	입원	정형	20160906	20160913	8	경추의 염좌 및 긴장	669,560	160,000		829,560
정형	입원	정형	20161024	20161029	6	손목터널증후군	272,600	60,000		332,600
정형	입원	정형	20161102	20161114	13	주간반 장애	470,400	130,000		600,400
정형	입원	정형	20161202	20161222	21	주간반 장애	1,767,900	210,000	500,000	2,477,900
정형	입원	정형	20161226	20161231	6	주간반 장애	303,600	60,000		363,600
정형	입원	정형	20170117	20170126	10	주간반 장애	468,420	100,000		568,420
정형	입원	정형	20170213	20170306	22	주간반 장애	1,831,500	220,000	500,000	2,551,500
정형	입원	정형	20170407	20170427	21	주간반 장애	2,346,600	210,000	1,000,000	3,556,600
정형	입원	정형	20170607	20170610	4	혈관증	298,285	30,000		328,285
정형	입원	정형	20170610	20170616	7	혈관증	106,660	70,000		176,660
정형	입원	정형	20170617	20170707	21	주간반 장애	2,895,170	210,000		3,095,170
정형	입원	정형	20170721	20170803	14	관절통	1,391,700	140,000		1,531,700
정형	입원	정형	20170818	20170831	14	관절통	2,162,100	140,000		2,302,100
정형	입원	정형	20170913	20170926	14	당뇨병	342,003	140,000		482,003
정형	입원	정형	20171010	20171023	14	당뇨병	588,300	140,000		708,300
정형	입원	정형	20171124	20171207	14	당뇨병	607,720	140,000	500,000	1,247,720
정형	입원	정형	20171221	20180104	15	당뇨병	1,065,960	150,000		1,215,960
정형	입원	정형	20180113	20180126	14	다상포진	925,400	140,000		1,065,400

	정변	입원	20180201	20180214	14	추간판전위	1,337,500	140,000		1,477,500
	정변	입원	20180202	20180202	0	추간판전위	351,500			351,500
	정변	입원	20180219	20180226	8	추간판전위	778,800	80,000		858,800
	정변	입원	20180305	20180320	16	추간판전위	1,537,680	160,000	500,000	2,197,680
	정변	입원	20180326	20180326	1	허시의 장애류	2,617,440	10,000		2,627,440
	정변	입원	20180327	20180327	1	허시의 장애류	2,516,240	10,000		2,526,240
	정변	입원	20180403	20180511	39	추간판전위	2,718,410	390,000	500,000	3,608,410
	정변	입원	20180514	20180604	22	추간판전위	1,844,700	220,000	1,000,000	3,064,700
	정변	입원	20180611	20180621	11	추간판전위	677,500	110,000		787,500
	정변	입원	20180705	20180720	16	무릎관절증	959,260	160,000		1,119,260
	정변	입원	20180725	20180809	16	무릎관절증	1,741,800	160,000	500,000	2,401,800
	정변	입원	20180809	20180824	16	무릎관절증	1,966,770	150,000		2,116,770
	정변	입원	20180904	20180917	14	당뇨병	588,660	140,000		728,660
	정변	입원	20180919	20180926	8	저궁의 폐합근증	1,201,640	80,000		1,281,640
	정변	입원	20181002	20181017	16	무릎관절증	1,330,100	160,000	500,000	1,990,100
	정변	입원	20181029	20181112	15	무릎관절증	2,558,080	150,000		2,708,080
	정변	입원	20181130	20190102	34	무릎관절증	3,534,570	340,000	1,000,000	4,874,570
	정변	입원	20190128	20190202	6	추간판장애	656,900	60,000		716,900
	정변	입원	20190207	20190223	17	추간판장애	1,692,400	170,000		1,862,400
	정변	입원	20190311	20190409	30	추간판장애	2,381,680	300,000	500,000	3,181,680
	정변	입원	20190510	20190525	16	추간판장애	870,000	160,000	500,000	1,530,000
	정변	입원	20190617	20190724	38	추간판장애	3,159,685	380,000	1,000,000	4,539,685
	정변	입원	20190822	20190831	10	대장포진	409,640	100,000		509,640
	정변	입원	20190923	20191015	23	대장포진	1,994,170	230,000	500,000	2,724,170
	정변	입원	20191104	20191116	13	당뇨병	963,240	130,000		1,093,240
	정변	입원	20191203	20191218	16	손목의 골절 및 간장	1,813,500	320,000		2,133,500
	정변	입원	20200106	20200131	26	무릎관절증	3,260,900	260,000		3,520,900
	정변	입원	20200309	20200331	23	무릎관절증	2,904,640	230,000	500,000	3,634,640
	전체 입원일수					합계	87,471,413	9,570,000	13,000,000	110,041,413

별지 3

병명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수	진단명	의료비	입원일당	간병비	총지급액
	20150506	20150526	21	아래허리통증	1,315,100	210,000		1,525,100
	20150615	20150704	20	아래허리통증	1,713,520	200,000	500,000	2,413,520
	20150724	20150813	21	아래허리통증	1,908,350	210,000	500,000	2,618,350
	20150909	20150929	21	아래허리통증	841,600	210,000		1,051,600
	20151015	20151031	17	아래허리통증	1,645,680	170,000	1,000,000	2,815,680
	20151123	20151212	20	아래허리통증	1,339,600	200,000		1,539,600
	20160102	20160122	21	어깨 관절통	2,265,950	210,000		2,475,950
	20160321	20160405	16	어깨 관절통	1,891,320	160,000	500,000	2,551,320
	20160504	20160517	14	어깨 관절통	1,278,330	140,000		1,418,330
	20160615	20160630	16	어깨 관절통	2,961,740	160,000	500,000	3,621,740
	20160722	20160804	13	대상포진	943,800	130,000		1,073,800
	20160808	20160813	6	대상포진	294,200	60,000	500,000	854,200
	20160816	20160827	12	대상포진	658,160	120,000		778,160
	20161024	20161029	6	손목터널증후군	272,600	60,000		332,600
	20161102	20161114	13	추간판 장애	470,400	130,000		600,400
	20161202	20161222	21	추간판 장애	1,767,900	210,000	500,000	2,477,900
	20161226	20161231	6	추간판 장애	303,600	60,000		363,600
	20170117	20170126	10	추간판 장애	468,420	100,000		568,420
	20170213	20170306	22	추간판 장애	1,831,500	220,000	500,000	2,551,500
	20170407	20170427	21	추간판 장애	2,346,600	210,000	1,000,000	3,556,600
	20170607	20170610	4	혈관종	298,285	30,000		328,285
	20170610	20170616	7	혈관종	106,660	70,000		176,660
	20170617	20170707	21	추간판 장애	2,885,170	210,000		3,095,170
	20170721	20170803	14	관절통	1,391,700	140,000		1,531,700
	20170818	20170831	14	관절통	2,162,100	140,000		2,302,100
	20170913	20170926	14	당뇨병	342,003	140,000		482,003

	20171010	20171023	14	당노병	568,300	140,000		708,300
	20171124	20171207	14	당노병	607,720	140,000	500,000	1,247,720
	20171221	20180104	15	당노병	1,065,980	150,000		1,215,980
	20180113	20180126	14	대상포진	925,400	140,000		1,065,400
	20180201	20180214	14	주간판전위	1,337,500	140,000		1,477,500
	20180219	20180226	8	주간판전위	778,800	80,000		858,800
	20180305	20180320	16	주간판전위	1,537,680	160,000	500,000	2,197,680
	20180403	20180511	39	주간판전위	2,718,410	390,000	500,000	3,608,410
	20180514	20180604	22	주간판전위	1,844,700	220,000	1,000,000	3,064,700
	20180611	20180621	11	주간판전위	677,500	110,000		787,500
	20180705	20180720	16	무릎관절증	959,260	160,000		1,119,260
	20180725	20180809	16	무릎관절증	1,741,800	160,000	500,000	2,401,800
	20180809	20180824	16	무릎관절증	1,966,770	150,000		2,116,770
	20181002	20181017	16	무릎관절증	1,330,100	160,000	500,000	1,990,100
	20181029	20181112	15	무릎관절증	2,558,080	150,000		2,708,080
	20181130	20190102	34	무릎관절증	3,534,570	340,000	1,000,000	4,874,570
	20190128	20190202	6	주간판장애	656,900	60,000		716,900
	20190207	20190223	17	주간판장애	1,692,400	170,000		1,862,400
	20190311	20190409	30	주간판장애	2,381,680	300,000	500,000	3,181,680
	20190510	20190525	16	주간판장애	870,000	160,000	500,000	1,530,000
	20190617	20190724	38	주간판장애	3,159,685	380,000	1,000,000	4,539,685
	20190822	20190831	10	대상포진	409,640	100,000		509,640
	20190923	20191015	23	대상포진	1,994,170	230,000	500,000	2,724,170
	20191104	20191116	13	당노병	963,240	130,000		1,093,240
	20191203	20191218	16	손목의 염좌 및 긴장	1,813,500	320,000		2,133,500
	20200106	20200131	26	무릎관절증	3,260,900	260,000		3,520,900
	20200309	20200331	23	무릎관절증	2,904,640	230,000	500,000	3,634,640

